제349회국회(임시회)

정 무 위 원 회

이 자료는 2월16일(목) 정무위 개회 시(10시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 다.

업 무 현 황

2017. 2. 16.

금융위원회

목 차

I. 2017년 금	금융정책 여건	및 방향 …	1
Ⅱ. 2017년 금	금융정책 세부	·실천계획	14
1. 금융시장	위험요인에 철	저히 대응 …	15
핵심과제①	금융시장 안정	강화	16
핵심과제②	가계부채 관리	강화	19
핵심과제③	한계기업 구조	조정	22
핵심과제④	금융시장 질서	확립	23
2. 민생안정	을 위한 금융지	원 확대	26
핵심과제⑤	서민 금융지원	<u> </u> 확대	27
핵심과제⑥	중소기업 지원	! 강화	29
핵심과제⑦	취약차주 보호	. 강화	32
핵심과제⑧	금융소비자 보	.호 강화	34
3. 경제활력	제고를 위한 금	금융의 역할 경	-화 37
핵심과제⑨	성장잠재력 후	·충 지원	38
핵심과제⑩	창업 • 기술혁	신기업 지원 …	40
핵심과제⑪	금융업의 경쟁	력 강화	42
핵심과제⑫	새로운 금융서	비스 출현	······48
Ⅲ. 금융위원	희 일반 현황	•	51

Ⅰ. 2017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

- 1. 2017년 금융정책 여건
- 2. 2017년 금융정책 방향

1. 2017년 금융정책 여건

1 대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- □ 세계경제는 '08년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美 금리상승과 强달러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중대
- o (실물)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 속에 미국·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**와만히 개선**될 전망
 - * 세계경제성장률(IMF, %) : ('00~'07 평균) 4.5 ('12~'15 평균) 3.4 ('16) 3.1 ('17^e) 3.4 (17년 성장률 전망) 美 2.2, 中 6.2, 선진국 1.8, 신흥국 4.6
- (금융) 금리상승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화*와 强달러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환시장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
 - * 글로벌 펀드자금(美 대선후~16년말, 억달러) : 선진국 (주식)+633 (채권)△220 신흥국 (주식)△145 (채권)△147
- □ 美 新정부의 정책방향과 '16년부터 이어져온 美 금리인상 기조, 유럽·중국·신흥국 불안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
- (美 금리인상 속도) 美 新정부의 정책 구체화와 기준금리 인상^{*}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^{**}하고 시장 불안이 확대될 소지
 - * 16.12월 FOMC : 기준금리 인상(25bp) & '17년 3회 인상 전망(점도표 중위값)
- ** 美 10년 만기 국채금리(%): (15년말) 2.27 (16.11.8) 1.85 (16년말) 2.44
- ② (유럽) 브렉시트 진행과정, ECB의 통화정책 방향, 이탈리아 은행부실 등 불안요인이 지속
- ❸ (중국) 통상환경 악화, 부동산시장 위축,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 및 외화보유액 감소*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
 - * 중국 외환보유액(조달러) : (15.12월) 3.33 (6월) 3.21 (8월) 3.17 (10월) 3.12 (11월) 3.05
- ④ (신흥국) 경기둔화 우려, 强달러에 따른 자금유출 및 통화가치 하락^{*} 등으로 신흥국 금융불안이 심화될 가능성
 - * 美 대선 이후 신흥국의 달러 대비 환율 변화율(16.11.8~12.30, %): (터키) +11.5 (멕시코) +13.1 (남아공) +4.1 (인도네시아) +3.7 (말레이시아) +7.5

2 국내 여건 및 리스크 요인

〈국내 여건〉

- [] (거시경제) '17년 국내경제는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수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
 - * 韓 성장률 전망: (IMF) 3.0% (OECD) 2.6% (한국은행) 2.5% (기재부) 2.6%
- (내수) 유가상승, 내구재 소비둔화,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으로 소비·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 예상
 - * 내구재 판매(전년동기비,%) : (15년) 10.2 (16.上) 8.4 (3Q) 1.3 (10월) 0.7 (11월) 1.8
 - * 국내건설수주액(전년동기비,%): (15.30)50.4 (40)40.1 (16.10)13.8 (20)△6.3 (30)2.7
- (수출) 유가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나 중국 성장 문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
 - * 수출증가율(통관)(전년동기비,%): (14년)2.3 (15년)△8.0 (16년)△5.9
- ② (금융시장)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요인보다는 美 금리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외환·채권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- (환율) 달러화 강세 속에 원/달러 환율 상승이 지속될 우려
 - * 달러인덱스 변화율(%) : (16년중) +3.6 <u>(美 대선후~16년말) +4.4</u>
 - * 원/달러 환율 변화율(%): (16년중) +3.0 (美 대선후~16년말) +6.4
- (**금리**) 美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로 美**금리가 상승**하는 경우 국내금리가 이에 **동조화**되며 **추가적으로 상승** 가능
 - * 국고 3년 금리(%): (15년말) 1.662 (16.11.8) 1.425 (16년말) 1.638 10년 금리(%): (15년말) 2.076 (16.11.8) 1.702 (16년말) 2.074
- 美 기준금리 인상후 국내 국채금리는 美 국채금리 대비 소폭 상숭(3년물) 또는 하락(5년, 10년물)하며 내외금리차가 축소
- * 韓국채금리-美국채금리 차이(bp): [美대선전] (1y)+78 (3y)+41 (5y)+19 (10y)△15 [16.12.30] (1y)+76 (3y)+19 (5y)△13 (10y)△37
- (주가) 외국인 자금 유입^{*} 속에 주가가 아직은 양호한 흐름이나,
- *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(조원) : (美 대선후~16년말) +1.6
-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**외국인 주식** 자금이 유출세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

- ③ (금융산업)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권평가손이 발생하여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,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
- 금리상승시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**채권평가손**이 발생 하여 **이익 감소**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,
 - 은행의 순이자마진 증대, 보험사의 이차역마진 해소 등으로 이익구조 개선이 가능한 측면 또한 존재
- 한편, 그간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**금융회사 자본비율이 지속 개선** 되는 등 양호한 **건전성 수준 감안시 감내 가능**한 것으로 평가

<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(%) >

	15.4분기(A)	16.1분기	16.2분기	16.3분기(B)	B-A(%p)
은행 BIS 비율	13.9	14.0	14.4	14.8	+0.9
생보 RBC 비율	278.3	284.7	297.1	300.5	+22.2
손보 RBC 비율	244.4	251.4	269.1	280.8	+36.4
증권사 NCR 비율 [*]	-	528.7	547.5	571.8	+43.1**
저축은행 BIS 비율	14.1	14.2	14.5	14.7	+0.6

- * 16년부터 新NCR 기준 전면시행 ** 16.3분기와 16.1분기 값의 차이
- ④ (기업자금시장) 기업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, 은행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
- **중소기업**을 위주로 **은행의 기업대출이 지속 중가***하고 있으나 **증가율은 다소 둔화**되고 있는 상황
 - * 은행기업대출(1~11월중 증감, 조원) : (12~14년 평균)48.7 (15년)58.2 (16년)35.8 대기업 : (12~14년 평균)21.0 (15년) 1.1 (16년)△0.5 중소기업 : (12~14년 평균)27.8 (15년) 57.0 (16년)36.3
- o 중소기업에 대한 **은행대출태도가 강화***되고 **가산금리**가 시장 금리와 동반 **상승****하고 있어 **자금조달 비용**이 **중대**될 가능성
 - * 은행대출태도지수(강화<0<완화): (15.2Q)+9 (15.4Q)△3 (16.2Q)△19 (16.4Q)△17
- ** 16.11월중 중기(신용대출) 가산금리 변화 : 연초대비 +29bp, 6월대비 +20bp
- 금리상승과 불확실성 증대로 **양극화가 확대***되어 非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질 소지
- * 신용스프레드(%, AA-와 A+ 등급간): (15년말) 40.6 (16.11.8) 63.7 (16.12.30) 66.2

〈민스크 요인〉

- □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, 금리상승 등에 따라 대외불안이 대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작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
- ① (가계부채) 8.25대책의 효과, 금리 상승세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나, 예년에 비해 중가속도*가 여전히 빠른 수준
 - * 은행 가계대출 증가(조원): (14년)+38.6 (15년)+78.2 (16년)+68.8
 -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금리상승에 대응하여 한계·취약차주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
 - * 非은행 가계대출 증가(조원) : (14년)+26.8 (15년)+31.9 (16.1~11월)+49.2
- ② (기업 자금조달)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계기업*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필요
 - * 한계기업[3년연속 이자보상비율>1] 비중('10년→'15년, %) : (전체) 11.4→14.7, (해운) 8.8 → 18.6 (조선) 6.2 → 14.7 (철강) 4.6 → 12.3
- ③ (금융시장 불안) 美 금리인상 등으로 내외금리차 축소, 글로벌 시장 불안 확대시 국내 주식·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
 - * 外人 주식자금 순유입(조원) : (16년중)+12.1 (美 대선후~16년말)+1.6 外人 채권자금 순유입(조원) : (16년중)△12.6 (美 대선후~16년말)△2.3
 - 美 금리 동조화로 **국내 금리가 상승**하는 과정에서 국채-회사채간 신용스프레드 확대^{*} 등 **회사채 시장의 위축**^{**}이 발생할 가능성
 - * 국채·회사채(A+) 신용스프레드(%): (15년말) 98 (16.11.8) 114 (16.12.30) 115
- ** 회사채 순발행 규모(억원) : (16.7월)+292 (9월)△6,431 (11월)△13,584 (12월)△7,091
- ④ (취약계층 애로) 금융접근성 감소, 금융비용 증가로 상환능력이 낮은 서민·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중대될 가능성
- ➡ 대내외 불안요인이 국내 경제·금융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지않도록 가계·기업부채 리스크 등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

참 고

2016년 주요정책 對국민 서베이 결과

- ★ '17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(1,000명) 및 전문가 집단(200명)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* (KSOI, '16.12월)
- * 설문 설계 : 금융개혁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, 반기별로 정기적인 서베이 실시중('15.12월, '16.8월, '16.12월)

금융개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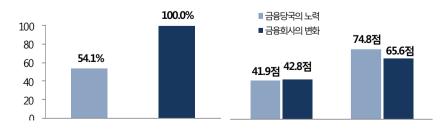
- □ **(인지도)** 일반인 전문가 모두 **상당한 수준***으로 인지
 - * 금융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 인지 : 일반인 54.1%, 전문가 100.0%
- **일반인**의 경우 '16.8월 서베이 결과(65.9%')에 비해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
 - * '16.8월 서베이 결과, 일반인 중 4개 이상의 금융개혁과제를 인지한 비중이 당초 97.4% 였으나, 설문 수행기관인 한국갤럽에서 데이터 처리상 오류로 인해 잘못 산정된 것으로 알려옴에 따라 65.9%로 정정

< 설문 대상 금융개혁과제 8개 >

'16.8월 설문	'16.12월 설문
	10.122 2 2 2
계좌이동서비스, 크라우드펀딩, 인터넷 전문 은행, ISA, 내집연금 3종세트, 성과연봉제, 간편결제·간편송금, 로보어드바이저	계좌이동서비스, 크라우드펀딩, 인터넷 전문 은행, ISA, 기술금융, 핀테크, 보험 다모아, 비대면 계좌개설

- □ (금융당국의 노력) 일반인의 평가는 '15년보다 상승(41.8점 → 41.94점)
- o **전문가**의 평가는 '15년 서베이 보다 다소 **하락**(79.9점 → 74.75점)
- □ (금융회사의 변화) 정문가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, 일반 국민은 금융회사의 변화를 조금 더 높게 평가
- 특히, 일반 국민은 '15년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의 변화 노력을 **높게 평가**('그렇다' 이상 18.3% → 23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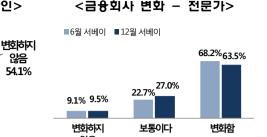
<금융개혁과제 4개 이상 인지> <금융당국 노력 및 금융회사 변화>



<금융회사 변화 - 일반인>

변화한

23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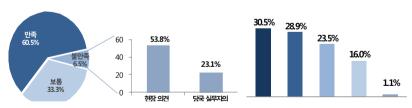
□ (만족도) 전문가는 '15년 금융개혁 서베이 결과(63.6%)와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(60.5%)를 보임

않음

- o '15년 서베이와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(30.5%)를 주요 만족 요인으로 평가하였고, 금융회사의 변화와 혁신(23.5%)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짐
 - * '15년 서베이 만족도 :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(40.1%), 현장중심의 개혁(38.7%)
- o 금융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일부 전문가는 '현장의견 수렴부족'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
 - * '15년 서베이 불만족 주요 요인 : 금융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는 태도(41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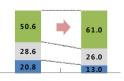
<금융개혁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>

<만족하는 이유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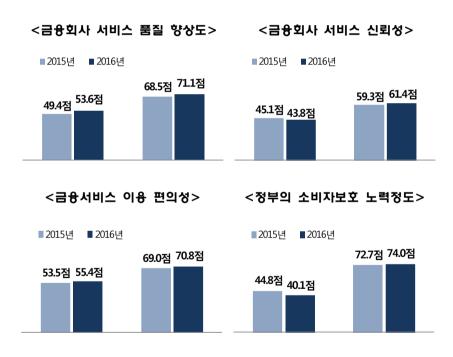
ㅇ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능 확립 여부는 '15년 조사보다 높게 평가됨

('그렇다'이상 답변 50.6% → 61.0%)



* '그렇다' 이상(%): (금융회사) 74.3, (금융협회) 81.8 <-> (학계) 40.0, (일반회사) 38.5

- □ (전반적 금융인식) 금융 서비스 품질개선, 신뢰도, 편의성 등에 대해 전문가(60~70점)는 일반인(30~50점)보다 높게 평가
- '15년과 비교해서 **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** 및 **금융회사 서비스** 품질 향상도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, 전문가 모두 상승
 - 다만, 일반 국민은 '15년 서베이 보다 금융회사 서비스 신뢰성 및 정부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낮게 평가



▶ 향후 금융개혁은 금융회사의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정부의소비자보호 노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

2 2017년 추진과제 (전문가 대상)

□ 중점 추진과제

- **금융권 정책고객**(금융사·협회 등)과 비금융권 정책고객 모두 **가계부채 관리**를 최우선으로 선정
- o 금융업권은 여전히 금융규제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

순위	조저 초지기대	OCI-2/0/\		
군귀	중점 추진과제	응답률(%)	금융업권	비금융업궙
1	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	45.0	41.0	50.6
2	금융규제개혁	17.5	23.9	8.4
3	금융/IT 융합 등 핀테크 활성화	11.0	13.7	7.2
4	기업구조조정	9.5	6.8	13.3
5	금융소비자 보호강화	7.0	4.3	10.8

□ 주요 위험 요인

- (대외) 미국 금리 인상, 미국 신 행정부 출범, 중국 경기 둔화 등
- (대내) 가계부채 위험 증가, 취약업종 기업부실 확대,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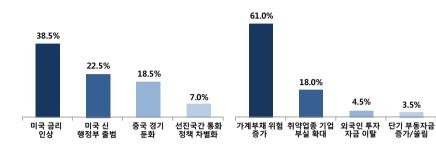
□ 정책 목표별 핵심과제

- (금융 안정) 가계부채 관리 → 금융시장 안정 → 올바른 지배 구조 정착 → 기업구조조정 順
- (경쟁과 혁신) 금융규제개혁 → 금융당국의 변화 → 핀테크 활성화 → 해외진출 활성화 順
- (기업과 서민) 금융소비자 보호 → 정책금융 역할강화 → 서민 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→ 금융사기/범죄 근절 順

【 주요 과제별 설문조사 결과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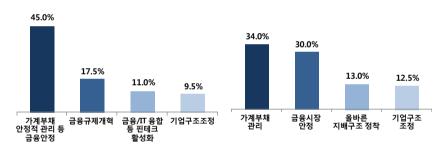
<대외 위험요인>

<대내 위험요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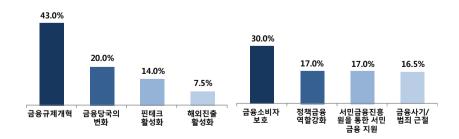
<u><17년 중점 추진 과제></u>

<정책 목표과제-튼튼한 금융>



<정책 목표과제-경쟁과 혁신>

<정책 목표과제-기업과 서민>



<mark>참 고</mark>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자 간담회 결과

1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간담회

- ◈ 일시/장소: '16.12.11(일) 15:0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◈ 주요 참석자
- o **금융위원장**, 부위원장, 사무처장, 담당국장, 금융감독원장 등
- 산업은행 회장, 기업은행장, 예금보험공사 사장, 자산관리공사 사장, 신보 이사장, 기보 이사장, 주택금융공사 사장, 거래소 이사장
- 은행연합회장, 금융투자협회장, 생명보험협회장, 손해보험협회장, 저축은행중앙회장, 여전협회장, 서민금융진흥원장, 금융보안원장
- □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
- □ 일관된 원칙하에 **가계·기업부채**를 보다 **철저히 관리**할 필요
- □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

2 서민·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 간담회

- ◈ 일시/장소 : '16.12.14(수) 10:3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◈ 주요 참석자
- o **금융위원장**, 사무처장, 담당국장,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
- ㅇ 기업은행장, 신보 이사장, 기보 이사장, 서민금융진흥원장
- o 은행연합회장, 국민·신한·우리·KEB하나·NH농협은행장
- □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
- □ **중소기업**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정책금융기관이**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
- □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할 필요

3 업권별 간담회

- ◈ 일시: '16.12.13(화), '16.12.15(목)
- ◈ 주요 참석자
 - ㅇ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상임위원, 증선위원, 사무처장, 금융감독원 등
 - ㅇ 업권별(은행/보험/금융투자/외국계) 금융회사 임직원
- □ 업권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
- □ 금융개혁을 멈추지 말고 추진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필요

2. 2017년 금융정책 방향

- ◆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¹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고
 서민·취약계층 지원 등 ²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
 ³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
- ① (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)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는 한편, 가계부채,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
- ② (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) 서민, 중소기업,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에 총력
- ③ (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)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
- ⇒ **3대 핵심과제 및 12개 실천계획을 속도감 있게 집행**하면서 **현장의 목소리를** 바탕으로 **지속 점검·보완**해 나갈 예정

【 핵심과제 1.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】

- 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
-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
- ③ 하계기업 구조조정
- 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

【 핵심과제 2.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】

- ⑤ 서민 금융지원 확대
- 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
- 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
- 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【 핵심과제 3.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】

- ⑨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
- ⑩ 창업·기술혁신기업 지원
- ①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
- ②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



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



추진 전략

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

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
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

핵심

과제

① 금융시장 안정 강화

 ② 가계부채

 관리 강화

③ 한계기업 구조조정

④ 금융시장 질서 확립

 ⑤ 서민 금융지원

 확대

⑥ 중소기업 지원 강화

⑦ 취약차주 보호 강화

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9 성 장 잠 재 력 확충 지원

⑩ 창업 · 기술 혁신기업 지원

①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

① 새로운 금융 서비스 출현

현장 중심 실천과 점검

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, 민생안정에 매진하겠습니다.

Ⅱ. 2017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

- 1.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
- 2.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- 3.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

1.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

- 〈 기본 방향 〉 -

-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·관리를 통해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
- 리스크 요인에 대한 **점검을 강화**하고 시장·산업의 안정성 제고
-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
-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
- 금융시장 참여자의 **책임성을 강화**하여 **시장 질서**를 확립

■ [핵심과제①] 금융시장 안정 강화

- 가. 리스크 점검·대응체계 강화
- 나.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 대비
- 다. 금융권 건전성 · 안정성 제고

■ [핵심과제②] 가계부채 관리 강화

- 가.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
- 나.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
- 다.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교화
- 라.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·점검 강화

■ [핵심과제③] 한계기업 구조조정

- 가. 일관된 원칙 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
- 나.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

■ [핵심과제④] 금융시장 질서 확립

- 가.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제기능 제고
- 나.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
- 다.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

핵심과제①

금융시장 안정 강화

가 리스크 점검·대응체계 강화

- (위험점검체계 마련) 비상대용체계(금융위·금감원 및 협회·유관 기관 참여)를 통해 모든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(비상상황실 운영)
- **금융시장, 서민금융, 기업금융, 금융산업** 4개팀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,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일일 1회(필요시 수시) 보고
- * <점검예시>▶ (금융시장) 국내외 금융시장 특이동향 등
 - ▶ (기업금융) 기업자금사정, 중소기업 여신 동향 등
 - ▶ (서민금융) 채무불이행자 동향, 서민금융 지원현황 등
 - ▶ (금융산업) 헤지포지션 조정 등 리스크 관리, 금융회사 자본여력 등



- ☐ (거시경제금융회의 등) 기재부, 금감원, 한은 등 금융안정 유관 기관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정례 협의 강화
- □ (스트레스 테스트) 엄격한 기준으로 은행, 보험, 증권 등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*하여 충격 흡수여력 정밀 점검
 - * 자본적정성, 유동성, 자산건전성, 주요 취약요인 등을 연1회 이상 점검
- **스트레스 테스트 상시화**(금감원 내 전담팀 설치) → **점검결과에** 따라 신속히 맞춤형 대책* 마련·시행
 - * 자본 확충, 유동성 확보, 부실자산 매각 등
- □ (시장과의 소통확대) 국내외 시장 전문가 Network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권별 리스크 점검

나 채권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철저 대비

- □ (회사채 인수지원) 산은 등의 「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」을 본격 가동하여 최대 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('17.1분기)
 - * 미매각이 발생한 중소·중견기업 발행 BBB~A등급 채권의 최대 30%를 산은에서 인수
- □ (회사채 유동화 보증) '17년 중 P-CBO를 1.6조원 지원(신보)
- □ (회사채시장 활성화) 유동화 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(BBB→BB) 등 「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* (*16.7월)」을 차질없이 이행
 - *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자 요건 완화(17.1분기) 담보부사채 담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제출(17.2분기) 등
- □ (채권시장 안정펀드)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(10조원+a) 재가동 등 비상조치도 철저히 사전 준비

다 금융권 건전성 안정성 제고

- □ (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)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에 따른 금융권 영향 분석 및 관련 제도 정비
- 은행의 **순안정자금조달비율(NSFR), 레버리지비율** 및 **유동화 익스포져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(17.4분**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, '18년 시행)
- IFRS4 2단계 도입('17.상 기준서 확정 → '21년 시행 예정)에 대비하여
 보험사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연착륙 방안 마련
- □ (외화유동성 제고) 대외 충격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
- 대외 불안시 급격한 외화유출에 따른 **신용경색을 방지**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에 대한 **외화LCR 규제 도입**('17.1.1일 시행)

- □ (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)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
- (저축은행)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충당금 적립률 강화(17.1분기)
- (상호금융)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('17.1분기) 및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한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 도모
- (여전사) 카드대출 현황 및 증가원인, 카드대출 금리체계· 운용 등에 대해 점검하고('17.1분기),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
- □ (신규 감독체계)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감독체계 마련
- P2P 대출 연계 **대부업체의 금융위 등록**, P2P 대출 **실태조사 정기화**(반기 1회) 등 모니터링 강화('17.상')
- 금융사 전산시스템의 취약점 상시 분석·점검 및 금융보안원-금융사 간 침해정보 공유체계 강화('17.2분기)

핵심과제②

가계부채 관리 강화

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

- □ (여신심사가이드라인) "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" "조금이라도 처음부터 나눠 갚음"으로써 『빚을 줄여나가는 구조』 형성
- 잔금대출('17.1.1이후 분양공고분), 상호금융·새마을금고('17.3월~) 등 全 금융부문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
- □ (여신심사 선진화) 금융업권의 활용도, 해외 선진사례 등을 감안,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 마련('17.1분기)
- (1단계)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, DTI는 산정방식 합리화(17년)
- **(2단계) DSR**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*('18년)
 - * 은행권부터 개발 시범적용하고, 여타업권은 은행권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적용
- **(3단계)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 정착**('19년 이후)

나 가계부채 취약부문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내실화

(1) 서민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개편

- □ "서민층 실수요자"에게 충분히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하고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확대('17.1.1부터 적용)
- (서민층에 집중) 주택가격 요건 강화(디딤돌·보금자리론), 소득 요건 신설(보금자리론)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접근가능성 제고
 - * (디딤돌대출) 주택가격 6→5억원, (보금자리론) 소득요건 年7천만원 신설, 주택가격 9→6억원, 대출한도 5→3억원
- (실수요자 지원 강화)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 요건(3년대 처분) 개선을 통해 투기적 목적의 대출수요 억제
 - *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, 미준수시 연차별 가산금리 부과
- (공급규모 확대·비중변경)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(41→44조원) 하고, 금리상승기에 대비하여 순수고정금리대출 확대 추진
 - * 디딤돌대출(8조원 유지), 보금자리론(14.5조원→15조원), 적격대출(18조원→20조원)
 - **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비중을 현재 50%수준에서 매년 15%p씩 확대

(2) 전세자금·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출시

- □ 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**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**과 **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유도**하는 **상품 출시**('17.1월중)
-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 발생전까지 **자발적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 공급**("17~'18년, 2년간)
 - * 신규분양 주택을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는 입주예정자에 대해 만기 10~30년, 고정금리, 비거치·분할상환 조건 (DTI는 80%까지 허용)
- 대출기간(2년)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%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, 보증기관(주금공, SGI) 전세보증료율 인하
- * <사례 : 1억원 대출(이자 연3%, 만기2년)시> 인센티브금액 총 102만원 (이자부담감소 29만원 보증료감소 19만원 소득세감면 54만원)

(3) 책임한정(비소구형) 주담대 시범사업

- □ 저소득 서민(연소득 3천만원 이하)을 위해 **주택금융공사 디딤돌** 대출중 일부를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 실시(*17.상)
 - * 채무자 책임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가액으로 한정, 그 외 재산의 소구권 제한
- 주택금융공사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**민간 은행에도 확산 유도**

(4) 고령충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내집연금 개선

- □ 그동안 제기된 **주택연금 가입관련 주요 불편사항들을 개선**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 경감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
- **배우자 명의 주담대**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 하도록 **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(1종)의 가입요건 개선(**"17.1분기)
- o 기존 주택연금 **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** 축소되었던 주택 연금 **월 지급금 회복** ('17.4분기)

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정교화

- □ (지원 강화)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
 - o 서민금융진흥원, 기업은행이 경영·재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저리자금 프로그램과 연계
 - ◇ 창업·운영자금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신용등급
 7등급 이하→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('17.1분기)
 - * 미소금융 지원규모도 '16년 0.5조원→'17년 0.6조원으로 확대
 -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**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**하는 프로그램 마련
- □ (리스크관리 정교화) 자영업자 대출 관련 과밀업종 대출 억제 등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

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 점검 강화

- □ (모니터링 강화) 업권별·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
- o 현재 주1회 개최 원칙으로 운영중인 금융위/금감원 가계부채 특별점검TF를 지속 가동
- 현행 일별(은행), 격주별(상호금융), 월별(저축은행, 여전, 보험) 점검체계의 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
- □ (특별점검 연장 실시) '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계대출 특별 점검을 연장 실시
- o '17년 은행별 **가계대출 관리계획 대비 이행여부**를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빨라 **리스크 관리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** 실시
- □ (스트레스 테스트)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리상승이全 업권,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분석
-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**맞춤형 대책*** 마련에 활용
 - * 선제적 자본확충, 부실자산 정리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,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,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

핵심과제③

한계기업 구조조정

가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

- ☐ (경기민감업종) "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"이라는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적극 추진
- 조선·해운업 이외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
- □ (상시구조조정)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및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선제적 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
- 매분기별 **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** 하도록 하고, **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**을 **공개**
-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 "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" 규모를 확대(1천→5천억원)하고 대기업도 지원

나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

- □ (외생절차 효과성 제고)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-Packaged Plan 활성화 지원
- □ (시장친화적 구조조정)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활성화
- **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** 마련 → **온정적 신용위험평가**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**선정이 지연**되는 사례 **방지**
- **구조조정채권의 매각가격**에 대한 **이견을 조정하는 제3의 독립적** 평가기관 운영 → 구조조정채권 매각 지연 문제 해소
-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→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

핵심과제④

금융시장 질서 확립

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제기능 제고

- □ (회계)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'선임-회계감사-감독・제재'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**종합대책** 발표('17.1.20일)
- (선임) 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등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일정 수준 이상 회계법인에만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 부여
- (감사)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확대 및 감사대상회사와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하고 핵심감사제(KAM) 확대 도입
- (감독·제재) 감리주기 단축(25→10년. 다만, 자유선임회사는 6년내 우선 감리) 및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, 과징금 강화 등 제재 실효성 제고
- □ (신용평가)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('16.9.22)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신평사의 독립성 제고
- 민간금융회사(약 105개사)의 자체신용도를 '17년부터,
 일반기업(약 320여개사)은 '18년**부터 공개
- 신평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발행사가 아닌 투자자·구독자 등 제3자의 의뢰에 의한 신용평가 허용 ('17.1분기)
- 발행사가 희망할 경우 금감원이 발행사 대신 신평사를 선정 하는 "신평사 선정신청제"를 시행 ('17.하)
- **불건전 영업·부실평가** 등에 대한 **제재수준을 상향조정** 하고, **부실평가 손해배상 책임** 도입(자본시장법 개정사항)
- □ (스튜어드십코드)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('17.1분기)
-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**법령해석** 및 비조치의견서(No Action Letter) 등 적극 제공
- 금융업권별 설명회(1월), 스튜어드십코드 선도 참여기관 간담회 (1분기) 등 코드 도입 초기의 관련 업계 확산을 지원

나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

- □ (궁매도·불궁정거래)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^{*}을 차질 없이 추진 하는 한편, 정치 상황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차단
 - * 공매도 거래자 증자참여 제한,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, 공매도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
- 시장질서확립 T/F(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, '16.12월 구성)를 통해 테마주 등 단기 이상급등ㆍ이상매매 종목에 대한 대응 강화
- **모바일 포렌식^{*} 도입**으로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**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·효과** 개선('17. 상반기)
 - *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와 기술을 통칭
- □ (장시제도) 자율공시 중 기술·특허 관련 중요정보^{*}를 의무공시로 전환(1월)하고, 기타 중요항목도 검토· 발굴하여 의무공시로 전환
 - * '기술이전·도입·제휴계약', '특허권 취득 및 양수·양도'
- **거래소 공시**를 통해 중요정보가 누락 없이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여부에 대한 **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 확대**(2분기)
- □ (유사투자자문업)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 강화
-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규제 등 **신고요건 신설, 폐업후** 편법적 영업 금지, 미신고 영업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('17.상)
- o 파급력이 높은 **방송매체 출연자에 대한 상시검증*** 등 감독 강화
 - * 예: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송출연 제한 (금융당국-방송사 MOU)

다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

- □ (자금세탁방지제도의 착근 유도) 불법자금의 은닉을 적발하기위한 현행 제도 운영의 취약·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해소
-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시 **건수 위주 업무관행을 개선**하고 보고내용 및 심사분석의 **품질을 제고**(연간)
- 자금의 실소유주 확인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배포, 저위험고객 대상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선업무 효율화(*17.하)
- 민간자격제도 도입,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분야 전문가 육성 기반 마련('17.상)
- (新**금융환경에 대용) 강화된 국제기준, Fin-tech** 발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에 대응한 **규율체계 마련**
- **인공지능기술**을 적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**진단 및 시범사업** 추진('17.하)
- 소액해외송금업 도입에 따라 외환거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방안 마련('17.하)

2.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
〈 기본 방향 〉

- 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
-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지원
- ㅇ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폭 강화
- ㅇ 금리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 연체 차주의 보호 강화
- ㅇ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■ [핵심과제(5)] 서민 금융지원 확대

- 가.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
- 나. 청년 · 대학생 · 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- 다.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

■ [핵심과제⑥]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가.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- 나.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
- 다.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(舊Fast Track) 신설

■ [핵심과제⑦] 취약차주 보호 강화

- 가.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
- 나,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
- 다.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계차주 지원 강화

■ [핵심과제⑧]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- 가.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
- 나. 금융사고·금융사기 근절
- 다.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·업무 체계 개선

핵심과제⑤

서민 금융지원 확대

가 촘촘하고 견고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

- □ (정책자금 궁급 확대)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연 5.7조원(55만명)
 → 7조원*(67만명)으로 대폭 확대
 - * (햇살론) 연 2.5조원→연 3조원, (새희망홀씨) 연 2.5조원→연 3조원, (미소금융) 연 0.5조원→연 0.6조원, (바꿔드림론) 연 0.2조원→연 0.4조원
- □ (사각지대 해소) 한부모가정, 조손(祖孫)가정 등 정책 서민금융 지원의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^{*} 강화(17.2분기)
 - * 예) 미소금융 저신용 취약계층 생계자금(1,200만원 한도, 금리 3.0~4.5%)
 - * 예) 한부모가정(→학자금 대출), 새터민(→임대주택 보증금 대출) 등 지원대상별로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
- 특히, 취약계층이 **긴급 자금수요**(의료비 등)로 고금리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미소금융 **'긴급생계자금' 지원 확대***('17.2분기)
 - * 예) 성실상환시 500만원 이내 지원 \rightarrow 긴급목적 증명시 1천만원 이내 지원
- □ (중금리 대출 활성화) 사잇돌 대출,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^{*} 저변을 확대
 - * 그간 은행·저축은행 사잇돌 대출(총 3,729억원) 등에 힘입어 금융회사 자체 중금리 대출 시장도 '16년 0.9조원 규모로 성장(금융회사 취급액 자체 추정 기준)
-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('17.하)하고,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3년간 총 0.7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지원 지속
- 취급 금융회사를 은행·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검토
- * 취급 저축은행도 30개→38개로 확대('17.1월)
- □ (신협 관계형금융 강화) 상호금융 본연의 취지에 맞게 조합의 자금운용을 '조합원 중금리 신용대출' 중심으로 활성화
-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규제 개선,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('17.1분기) 등 부동산 담보대출의 과도한 증가세 억제도 병행

나 청년·대학생·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- □ (청년·대학생)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 확대('17.2분기)
-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, 청년·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
 지원한도 확대(예: 800만원→1,200만원)
- 저소득 청년·대학생의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거주지 임차 보증금 대출* 지원 신설
 - * 예) 지원 한도 2,000만원 이내, 금리 4.5% 이하
- 최근 경기악화로 늘어난 재학·구직기간을 감안하여 청년·대학생 행살론 거치기간(예: 4→6년) 및 상환기간(예: 5→7년) 연장
- □ (장애인)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도 제고, 불합리한 대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·추진(*17.상)
- ㅇ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실시
 - * (예) 불합리한 대출·카드발급·보험가입 거절관행 개선,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(신탁을 통해 장애 자녀에게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면제) 활성화 등
- 모바일·ATM 및 금융회사 창구 등에 대한 장애인 이용 접근성 제고

다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 개편

- □ (서민금융 접근성 제고)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(33개→40여개)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('17년중)
- o 전국 어디에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~1.5시간 내 도달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도시·농어촌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
- □ (고용·복지 지원과 연계 강화) 서민의 자활·재기를 위해 필요한 서민금융·고용·복지 서비스의 원스톱 종합 지원을 추진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별도 이동없이 고용·복지 지원을
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 시범사업* 실시('16.12월~'17.3월)
 - * 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서울중앙·부천·대전)에서 시범사업 운영중

핵심과제⑥

중소기업 지원 강화

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
- □ (정책금융 궁급 확대)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(중견)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(전년대비 9조원)
- (산·기은/신·기보) 중소기업 지원을 전년 대비 6.8조원 확대
 - * 산은·기은(조원): ('16)58.7→('17)62.5 (+3.8), 신·기보(조원) : ('16)62.7→('17)65.7 (+3)
- **(산·기은) 중견기업 지원**을 전년 대비 **2.2조원 확대**(19.6→21.8조원)
- (유통화보증 지원) 재원조성 등을 통해 보증기관이 회사채 발행을 지워하는 '유동화보증'을 확대·운용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
 - * 旣 편입된 회사채의 경우 일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부 상환 후 연장 지원 (약 1.3조원)하고, 우수혁신형 기업 신규 회사채 발행도 적극 지원(연간 최대 약 3천억원)
- □ (자본시장 활용)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
- **크라우드펀딩** 발행지분이 **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장외주식거래** 플랫폼(KSM)에서 거래되는 경우 양도제한 예외 인정('17.상')
 - * 일반적인 장외거래의 경우 1년간 일반투자자에 대한 양도가 제한됨
- K-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공모규제 배제 범위를 확대*하는 등 장외시장 거래편의성 제고('17.상)
 - * (현행) 소액출자자(지분율 1%미만, 평가액 3억원 미만)만 매출신고 면제 (개선)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일반주주(지분율 10%미만)의 매출신고 면제
- K-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,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*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('17.상)
 - *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·운영
- o 중기특화증권사 **중간평가**(*17.5월)를 통해 실적이 극히 미진한 경우 **지정취소**를 검토하고, **제도개선** 방향도 모색

- □ (현장점검 강화) 중소기업의 현장에 보다 밀착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·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
- '금융현장지원단'이 중소·중견 기업까지 현장방문·애로사항 점검(1월 기업금융 집중점검의 달 운영 등)

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

- □ (상환유예·만기연장)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·보증에 대해서는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(원칙 1년)
- ※ 시중은행의 경우에도 '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' 등을 통해 상환유예,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유도
- □ (신규 유동성 지원)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(산·기은)·보증(신·기보) 등 제공
 - * (산은)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旣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50억원중견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 (기은) 해운업 협력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(금리 △0.5%) 우대)
- 특히, 사업다각화, 품목다변화 등 **사업재편을 준비중인 협력**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**사업재편 전용상품***을 지원
 - * 사업재편지원자금: 산은, 2.5조원, 금리 최대 △0.5%p 우대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: 산기보, 3,000억원, 보증료율 △0.2%p 우대, 보증비율 85%→90%
- □ (상담 및 컨설팅) 조선·해운업 밀집지역에 설치한 현장반^{*}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를 밀착 지원
 - * 부산, 울산, 거제, 창원, 목포에 설치, 각각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 2인 파견
-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원방안으로 안내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·해소

다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(舊Fast Track) 신설

- □ (유동성 지원 강화) 신·기보 특별보증시 보증비율을 60~70%로 상향(舊패스트트랙 40%) * 10억원 한도, 보증수수료 △0.2%p
 -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 수수료를 추가 우대(최대 0.3%p)
 - o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, 무보에서도 상환유예·만기 역장 등을 통해 유동성 공동지원
 - **중기지원 119 프로그램**(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)을 통해 **재기에 성공한 기업**에 대해 신·기보 **우대보증 지원**
 - * 보증비율 85%→90%, 보증료율 △0.2%
- □ (이용기간) 평균적인 기업회생 기간 등을 감안, 지원기간을 3년^{*}으로 한정하여 장기 이용을 방지
 - * 舊패스트트랙 및 법원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3년 미만 소요
- 다만, 종료 시점에서 **채권기관이 협의**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
- □ (경영관리 강화) 금감원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여 대상기업에 대해 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(연 1회)
- o 채권은행과 **경영개선목표,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** 중단 기준 등을 명시하는 특별약정 체결^{*}
 - *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
- □ (운영기한)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상시 운영

핵심과제⑦

취약차주 보호 강화

가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

- □ (채무연체 사전 예방)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
-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·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확인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 등 지원
- □ (연체차주 보호) 서민층 주거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완화 추진
- 현재 **연체이자율 수준**(연 11~15%)의 **걱정성을 점검**하고, 담보권 실행이전 **차주와 상담을 의무화**하는 방안 추진

나 채권추심 관리 개선 등 채무자 보호 강화

- □ (채무자 권리보호능력 제고) 불법 추심 피해예방,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구축('17.상)
- 특히, **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**에 대한 **정보도 포함**하여 채무자 권리보장 강화
- □ (민간 채권매입·추심 관리강화) 과도한 채권매입·추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
- 금융회사의 **부실채권 매각 프로세스 관리** 및 부실채권을 **매입한**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('17.1분기)
 - * (주요내용 예시) 매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과거 불법 추심 관련 기록 확인 의무(Due Diligence),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 등
- **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을 강화**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관리·감독 체계 구축을 유도(*17.1분기)
 - *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, 채권추심회사의 감독책임 부여 등(신정법 개정)

다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계차주 지원 강화

- □ (연체 이전) 현재 은행권에 적용중인 '신용대출 119' 프로그램^{*}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도 확대 시행('17.하)
 - * 대출만기 前 상환방식 변경, 이자유예,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 안내
- 신용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한계 차주의 **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**
- □ (연체 이후)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강구
- (이자부담 경감) 채무자가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자율 상한(예: 10% 수준) 설정(17.2분기)
 - *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에서 이자율을 원 채무의 1/2까지 경감 가능하나 고금리(30%) 채무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부담(15%) 지속
- 취약계층(기초수급자장애인 등)의 경우에는 이자부담을 추가 경감*
- * 예) 프리워크아웃시 1/2로 조정된 이자율에서 30%를 추가 인하
- **(상환방식 다양화)** 신복위 워크아웃시 **매월 납부금**을 채무자의 경제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**균등·체증식*** **등 다양화**(17.하)
 - * 예) 체증식 : 총 8년의 상환기간 동안 초기 2년은 10%, 잔여 6년간 90% 납부
- (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고) 신복위·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*가 사고·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채무 면제 등('17.1분기)
 - * 약정금액의 75%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경우
- □ (상환능력이 없는 경우) Fast-Track*의 전국 확산(5개→14개 지방 법원)을 통해 공적채무조정(개인회생·파산)으로 신속 연계 지원('17.상)
 - *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(최장9개월→최소3개월) 및 소요비용(법률 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) 절감 가능
 -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(500만원→700만원)

핵심과제⑧

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비

- □ (금소법 제정)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감독을 재분류·체계화하고, 전문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(*17.1분기*)
 - * 금소법 제정안 '17년 1분기 중 국회 제출
- (Cooling-Off 제도 도입) 대출상품 등에 대해 우선시행("16.12) 중인 금융상품 계약 철회권(Cooling-Off)을 여타 금융상품으로 확대
 - *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별법 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하던 숙려제도 관련 근거 조항을 금소법에 도입
- **(독립 금융상품자문업 도입)** 일반인들도 전문적·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**종합적인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**
 - * 투자성 상품 이외에도 예금성, 대출성, 보장성 상품까지 취급 가능
- □ (예금자보호 강화) 예금보험사고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
- **금전신탁 편입 예금**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이를 **예금**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('17.4분기)
- o 합병·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(각각 5천만원)를 적용('17.하)

구분 예금금액		예금보험금 수령액 (1년 내 재부실화시)	
합 병	A은행 : 4천만원 B은행 : 4천만원	8천만원	
계약이전	B은행 : 4천만원	종전 : 5천만원 → 개선 : 8천만원	

- 예금보험사고 발생시 **보험금 신속 지급***(예금수취기관 적용)('17.하)
 - * (현행) 은행은 약 5개월 소요 → (개선) **7영업일** 수준으로 단축(시스템 구축기간 부여)

- □ (맞춤형 금융교육) 청소년(교과반영), 성인(신용관리), 은퇴준비자(노후 자산관리), 금융소외자(핀테크 이용 등) 등 맞춤형 교육방안 발표(17.1월)
- □ (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)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개인 신용정보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하고, 보호체계를 확립('17.상')
- 신용정보법 규율대상을 **금융회사로 명확화**하고, **개인정보보호법** · **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을 해소**
- □ (대부이용자 보호 강화) 대부업자의 연대보증을 감축하여 제3자 피해 가능성을 경감하고 대출계약, 광고 등 주요 영업관행 개선('17.1분기)
- **대부중개 모범규준** 및 **표준위탁계약** 마련^{*}을 통해 대부중개 업자의 **건전 영업**을 **유도**하고, **분쟁·민원** 등을 예방
 - * 주요내용 : 상품요건 과장 등 불건전영업 금지, 배상책임 발생시 변제방법 명확화 등
- (조치명령권 제도 정비)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 조치명령권* (자본시장법 §416)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비
 - *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, 재산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

■ 금융사고 · 금융사기 근절

- □ (신종 금융사기 규제 강화)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적극 대응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
- 유사수신행위 조사·자료요구권(계좌조회권 포함)을 신설하고,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(유사수신금지법 개정 추진, 17.1분기)
- □ (보험사기 예방)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「보험사기 다잡아」업그레이드(~'17.4분기)
 - ※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**적발·제재결과 공유**, 관계기관 실무 **정례회의** 등 **공·사 보험 조사업무 협력 강화도** 추진

- □ (민생금융범죄수익 적발노력 강화) 서민대상 범죄로 조성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조기 적발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
- 금융회사의 불법사금융, 보이스피싱, 불법도박 등 서민범죄 관련 의심거래 보고 및 FIU의 심사분석자료의 법집행기관 제공 확대(연간)

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·업무 체계 개선

- □ (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)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공시(현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수수료만 공시)(*17.上)*
 - *「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」'17년 1분기 중 국회 제출 예정
- 판매업자가 **상품 판매시**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**수수료 수준** 및 체계를 소비자에게 설명
- □ (비교공시 확대) ISA비교공시 수준으로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・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확대 (*17.상)
- (펀드) 복잡・난해한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보완하여 일반 투자자를 위한 펀드 수익률 비교공시 전용사이트(펀드다모아) 개설
- (투자자문)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익률 비교공시 체계 마련
- (신용평가사) 부도기업의 과거 등급 추이, 등급변동 상세정보^{*} 등 비교공시 항목 확대
 - * 등급이 큰 폭으로 변화한 기업의 명단,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

3.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

〈 기본 방향 〉 -

- ★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금융개혁을 완수 하여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
- **정책금융**의 역할 강화를 통해 **경제활력 제고**를 뒷받침
- 新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'경제의 혈맥' 기능 강화
-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를 통해 금융업 경쟁력을 제고
- 핀테크 활성화 등 **새로운 혁신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** 지원

■ [핵심과제⑨]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

- 가.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
- 나.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
- 다.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<u>■ [핵심과제⑩] 창업·기술혁신기업 지원</u>

- 가. 제2단계 기술금융 추진
- 나.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
- 다. 재기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

■ [핵심과제⑪]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

- 가.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
- 나.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
- (1) 신탁업 역할 확대
- (2) 보험업 경쟁력 강화
- (3)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
- (4)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
- 다.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

■ [핵심과제⑫]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

- 가.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
- 나.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
- 다.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

핵심과제 ⑨

성장잠재력 확충 지원

가 정책금융 역량을 최대한 가동

- □ (총궁급 확대) 산·기은, 신·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'17년중 '16년 보다 8조원 늘어난 총 186.7조원 공급
- 특히, 신·기보등 보증기관은 **기금건전성을 유지**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 집행

<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계획 >

구 분	산 은	기 은	신 보	기 보	합계
'16년 계획	61조원	55조원	43.7조원	19조원	178.7조원
'17년 계획	62.5조원	58.5조원	45.7조원	20조원	186.7조원

- □ (신성장산업 지원)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포함한 미래 新성장 산업에 '16년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 자금공급
 - * 시설·운영 자금 대출,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금융 제공

나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

- □ (지원체계 효율화) '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' 등을 통해 복잡 다기한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기준을 단일화
- □ (정책금융기관 간 공조 강화) 신성장위원회*, 정책금융협의회**, 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지원효과 분석 및 애로사항 해소
 - * 금융위,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, 연도별·신성장분야별 정책금융 자금집행 규모 수립 등 ** 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, 신용정보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 채널
- □ (맞춤형 보증시스템 구축) 창업·성장기업에는 장기 분할상환 보증 구조를 도입하여, 사전 단계부터 합리적인 보증이용과 상환 유도

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- □ (유망 서비스업 지원 강화)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을 매칭하여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
- 재정자금과 결합하여 보건·의료, 관광,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 지속 조성('16년말 1.1조원)
- □ (금융권 공동 일자리박람회) 은행, 정책금융기관, 핀테크사 등과 협업을 통해 '금융권 창업·일자리박람회*' 매년 개최 검토
 - * `16.9월 "금융개혁! 창업·일자리 박람회"를 개최하여 청년취업생과 중소기업간 구인·구직 매칭, 창업경진대회 등 지원(→ 261개 기업, 약5,200여명 구직자 참가)
- □ (취업연계) 청년·대학생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(예: 1년 이상)에 대해 취업 알선 지원*(금융권 협업)
 - * 취업컨설팅 제공, 성실상환증명서 발급,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,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등
- □ (신규일자리 **창출**) 인터넷전문은행^{*}, 핀테크 활성화, 독립투자 자문업 허용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 **창출**(상시)
 - *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에서 금융·IT 부문 인력을 총 400여명 신규채용
- 외은지점 등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원활히 진출,
 인력 채용할 수 있도록 국내진입 관련 애로 적극 해소

핵심과제⑩

창업 · 기술혁신기업 지원

가 2단계 기술금융 추진

- □ (기술금융 공급확대) 기술금융 대출·투자 공급계획을 대폭 확대 하여 '17년까지 대출 80조원, 투자 1조원 공급(누적) 추진
 - * [대출] (당초) '17년 67조원, '19년 100조원 → (확대) '17년 80조원, '19년 130조원 [투자] (당초) '17년 0.5조원, '19년 1조원 → (확대) '17년 1조원, '19년 4조원
- □ (기술평가와 여신심사 일원화)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'통합 여신모형'을 마련하여 기술금융 체제를 완비('17.상)
 - * 기술평가 모형과 여신심사 모형 일원화 방안, 향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지침 등
- 기술평가와 여신심사를 통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「신용·기술평가 일원화 TF^{*}」 운영('17.2월)
 - * (구성) 금융위, 금감원(데이터 축적, 검증 등 필요시 참여), 은행권, TCB, TDB 등

나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 및 공급 확대

- □ (유망기업 중심의 상장·공모제도 개편) 새로운 상장·공모제도를 '17년초 시행하여, 자본시장에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^{*}
 - *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제도 도입,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신설 등을 위한 관련 거래소규정 개정·시행(17.1월)
- □ (코넥스시장 개선)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^{*}하고, 공시교육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개선
 - * 증권사의 코넥스 기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지원, 업종별 IR 활성화 등
- □ (크라우드 펀딩) 더 많은 창업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(*16.11월 발전방안 차질없이 추진)
 - * ('16년 실적) 성공기업 110개, 펀딩액 174억원 조달 → ('17년 목표) 200개 내외, 300억원 조달

-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**광고규제 완화^{*} 추진** 및 **청약시스템 인터페이스 개편** 등 편의성 제고(17.5월)
 - * (현행)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주소소개 및 링크제공만 가능
 → (개선) 기타 매체를 통해 펀딩업체명·중개업체명, 펀딩기간 등 광고 가능
- 신규 조성('16.12월)된 'Seeding 펀드'(80억원)를 통해 본격 투자
- □ (성장사다리펀드)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액을 확대('17.상)하고, 창업ㆍ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
- **펀드 회수자금 재투자** 및 **신규자금 조달**을 통해 **9,400억원**(기존자금 재투자 **2,600억원** + 신규자금 **6,800억원**) **규모의 신규펀드^{*} 조성**
 - * 신산업펀드(3,000억원), 기술금융펀드(3,000억원), 스타트업펀드(800억원), 재기지원펀드(2,000억원), 세컨더리펀드(600억원) 등
- ** 성장사다리펀드 누적 조성액은 6.3조원 → 7.2조원으로 확대
- o **창업·벤처, 기술가치 기업**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
 - * 총 투자액: '16년 0.99조원 → '17년 목표 1.3조원 ('17년 투자액 중 창업·벤처 부문 1,800억원, 기술가치 부문 3,000억원 지원 예정)

다 재기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

- □ (재창업지원 확대) 신·기보, 중진공, 신복위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'재창업지원'' 사업 활성화('17.상)
 - *「재창업지원」사업: ●재기신청자 정책금융기관 채무 최대 75% 감면, ❷신속한 신용회복 지원, ❸신규 자금지원(중진공대출에 산기보가 각각 25% 보증 공급)
- 한 번 실패한 기업에 대한 재창업 지원 확대 (→신·기보 재기지원 보증 활성화)

핵심과제①

금융업의 경쟁력 강화

가 금융개혁의 안착 및 상시화

- □ (금융개혁의 상시화) 기존 금융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, 신규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
- (개혁과제 제도화) 국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개혁 관련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 - * ① 국회 계류 법률 : 은행법, 자본시장법,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법률
 - ② 입법절차 진행 법률: 금융소비자보호법,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
- o (이행점검 강화) 음부즈만, 현장점검반을 통해 과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
 - 성과중심 문화 정착 등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제는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
- (신규과제 발굴)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위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 발굴은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행
 - 금발심 분과별로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금융개혁 과제 발굴에 주력
- □ (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) 규제민원포털 개선, 비조치 의견서 및 음부즈만 제도 활성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
- (금융규제 민원포털) 주제별^{*} 카테고리化, 키워드 검색 기능 도입 등을 통해 '금융규제 민원포털'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
 - * 영업·업무규제, IT보안, 건전성, 금융상품·광고, 자본시장·회계 등

- (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) 각 업권 협회를 통해 비조치
 의견서를 접수하고 임괄회신* 지속 추진
 - * '16.2월과 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한 전례
- (음부즈만 제도 활성화) 음부즈만 블로그*(*17년 1분기)를 통한
 고충민원 접수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관행 지속 개선
 - * '16.2월 출범, **민간전문가 7명**으로 구성, **제3자의 시각**에서 **금융규제를 상시** 점검·정비하고 금융현장의 고충민원 접수·개선권고 등 수행
- (외국계 금융회사 TF 운영) 분기마다 외국계 금융회사 TF를 운영하여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 지속 발굴·해소
- (패자부활전) '불수용 과제'도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^{*}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 관리('17년말)
 - * (수용과제) 분기별 성과평가회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성과 보고회 개최
 - * (불수용과제) 반기별 재검토회의 → 연말 패자부활전 → 수용여부 재결정
- □ (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) 금융개혁의 최종수혜자인 일반 국민과의 소통 통로도 확대, 홍보 지속 강화
- (현장메신저 확대 개편)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학생, 주부, 일반 직장인 등으로 현장메신저^{*}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
 - *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부서 실무자로 구성 → 분기별 간담회로 의견 청취
- (기업·소비자 점검 확대) 월 1회 일반 기업·금융소비자 현장 방문 실시를 통해 최종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효과 확인
- (취약계층 현장점검 추진) 장애인, 외국인 등 금융접근성이 낮은 계층까지 점검대상에 포함, 금융개혁 사각지대 지속 해소

┗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

(1) 신탁업 역할 확대

- □ **(신탁 전면개편) 종합 자산관리서비**스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**신탁제도 전면개편**(*17.하)
- **수탁재산 범위를 확대**하고 **생전신탁**, **유언신탁**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**규제를 대폭 해소**
- **자기신탁**(사업부문일부 신탁설정), 수익증권발행, 유동화신탁 등을 통해 신탁의 자금조달·유동화 기능을 확충
- 신탁업자 **자율성 확대**에 대응하여 **위탁자** 및 **수익증권 투자자** 등 고객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

(2) 보험업 경쟁력 강화

- □ (보험업 자율성 확대) 표준약관은 민간(보험협회)이 자율적 제· 개정(*17.1분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제출)
 - *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하고,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약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금감원이 변경 명령
- 보험사의 **부동산・외화자산・파생상품 투자 등과 관련된** 사전적 한도·비율 규제를 완화(17.1분기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)
- □ (단종보험* 활성화) 국민일상생활과 밀착된 1회성 소액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(*17.상)
 - * "單種보험": 재화·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·용역과 연계하여 모집 할 수 있는 보험상품(예시: 항공사-여행자보험 등)

- ☐ (실손의료보험 개편)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「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」을 차질 없이 추진
- o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「기본형 + 다양한 특약」 구조로 전환하고 보험금 未청구자 대상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(17.2분기)
- *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 미청구 가입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% 할인
- '끼워팔기'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 보험을 암·사망보험 등과 분리·판매(18.4월 시행)하도록 규정(17.1분기)
-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중단없는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 방안* 마련('17.4분기)
 - * 퇴직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 허용,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의료보험 일시 중지제도 등 검토
- □ (자동차보험 합리화·선진화)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자동차 등 기술 진화에 선제 대응
-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 차등화^{*} 및 공동 인수 대상 명확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지속
 - * (현행) 가해자·피해자 구분없이 할증 적용 → (변경) 가해자·피해자 할증 차등화
- 개인형 이동수단*에 대한 보험상품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·출시 등 지원('17.2분기)
 - * 개인형 이동수단(personal mobility): 전기자전거, 세그웨이(Segway) 등 전기가 주동력인 1~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
- 아울러, **자율 주행 자동차** 시대에 대비하여 **자동차보험제도의** 변화 방향*에 대한 검토 착수(*17.2분기)
- * (예) 사고책임 부담주체(운행자vs제조사),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

(3)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

- ☐ (거래소 구조개편)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
- □ (초대형 투자은행) 초대형 투자은행이 기업금융 등 새로운 영업을 차질없이 개시('17.2분기)할 수 있도록 준비
- □ (국채 담보 재활용)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('17.상)
- □ (전지증권제도 도입)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고 전자증권도입 로드맵을 마런('17.하)하는 등 '19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
 - * 전자증권법('16.3.22 공포)은 공포 후 4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날 시행
- □ (파생상품시장) 장내파생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장요건을 간소화(*17.4월)하고, 이를 바탕으로 5개 부문*에 대한 新상품 상장 추진
 - * ETF, 미니달러, 해외지수, 초장기국채, 개별주식 등
- □ (파생결합증권) 손실제한형 ETN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, 판매과정 녹취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(*17.2분기)

(4)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

- □ (제도개편) 금융지주회사를 시너지 강화 및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개편 (*17.3분기 법령 개정)
- 지주회사 내 겸직·업무위탁을 **사후보고**로 전환하고, **정보공유**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제약하는 핵심규제 **와화**
- 사업부문제 활성화 및 공통 **후선업무 통합수행**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**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** 유도

다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

- ◈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금융산업 육성을 통하여 우리 금융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
- □ (금융외연 확장) 저성장·저금리 극복 및 新시장 금융주도권 선점을 위해 금융회사·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
- o 업계를 중심으로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**정보 공유** 및 **현장 애로사항 수렴** 등을 위한 **정례 회의체**(해외진출동향 점검회의) **운영**
- o 동남아시아 등 新시장에 **한국형 금융인프라 수출** 적극 추진
 - * 기재부(KSP), 외교부(ODA) 등이 운영하는 해외 진출사업 적극적 참여 지속
 - * 실무급회의·초청연수·금융협력포럼 등을 통해 금융인프라 수요 적극 발굴
- □ (금융의 글로벌위상 강화) 금융중심지 역량 제고 및 체계적 금융 세일즈 외교 추진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
- **국제금융거래 활성화**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정책목표로 하는 「제4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'17~'19)」수립
- o 현지규제로 인한 해외진출 과정의 애로해소 등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**공식협의채널*** 확대 등 **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** 추진
 - * 한·중·일('06), 일본('12), 영국('14), 인니·베트남('15) 등과 정례회의 개최 중
- □ (자본시장 국제화) 외국인 통합계좌^{*} 단계적 도입, 국경간 펀드 개방(펀드패스포트) 준비^{**} 등 자본시장 국제화 추진
 - * 상장주식·장내파생상품 통합계좌(일괄주문·결제) 및 상장채권 일괄주문 도입 방안을 검토·추진(상반기)
 - ** 펀드패스포트(국경간 펀드판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장개방) 시행을 위해 펀드 등록·운용·감독 등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는 법개정 추진
- □ (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) 외은지점 영업규제(신용공여한도 등)를주요국 사례 및 외은지점 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('17.6월)
-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, 해소방안 마련 추진(연중)

핵심과제①

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

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

- □ (규제·제도 혁신)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의 재설계 추진
- **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**를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^{*}부터 추진('17.2분기)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여부 검토
 - * 비조치의견서,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,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
-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
 재검토('17.1분기)
- □ (신기술·금융 융합)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'블록체인'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용
- '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'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*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('17.1분기)
 - *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절차 간소화, 인증절차 통합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
- □ (지원체계) 핀테크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핀테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독·지원을 강화
- 핀테크 산업 성장에 맞추어 **감독·지원체계를 정교화·체계화** 하고 **핀테크지원센터 기능^{*}을 단계적으로 강화**('17.1분기)
 - *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지원 강화,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지원 강화 등
- 미래부 등 **관계부처와의 협력**을 강화하고,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**민관협력 네트워크^{*} 구축**('17.1분기)
 - * 핀테크지원센터, 금융회사별 핀테크지원기구, 유관기관(성장사다리펀드, D.Camp) 등

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

- □ (비이오페이 도입) 실물카드 없이 생체정보(예: 손바닥 정맥)만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거래방식 시범도입(17.상)
- 관련 법규 유권해석^{*} 등을 통해 도입기반 정비 후, 의향있는 카드사부터 시범운영하여 안전성·편의성 등을 검증
- * 예) 법규해석상 생체정보 인증을 신용카드 제시로 보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, 서명·비밀번호 입력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등 검토
- □ (인터넷전문은행) 24시간 이용가능한 「내 손안에 뱅크」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영업개시(케이뱅크2월말~3월초/카카오뱅크상반기, 잠정)
 - * (새로운 서비스모델) 휴대폰·이메일 기반 간편결제·송금,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, 음원·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 제공, 온라인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등
- □ (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고도화) 이용채널·대상계좌를 확대(4월)하고, 퇴근시가 이후에도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 고도화(17.10월)
 - * (채널)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(accountinfo.or.kr) → 은행창구 및 모바일 확대/ (대상계좌) 잔액 30만원계좌 → 50만원 / (이용시간) 09~17시 → 09~22시
- □ (보험다모아 개선)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 기능과 인터넷 포탈 간 연계서비스를 개시('17.7월)
- 양방향 소통을 위한 보험상담 게시판 개설, 소비자에 유익한 보험정보 안내 강화 등 홈페이지 개선 추진('17.4분기)
- □ (비대면 실명거래 확대)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대상 확대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('17.1월)
 - *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, 장애인·고령자의 APP 접근성에 관한 권고규정 신설
- □ (빅데이터)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분석·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역량 제고('17.상)
- 신정원에 **신용표본연구 DB***를 구축하여 **핀테크, 창업기업** 등에게 **빅데이터 컨설팅**을 제공하고, **학계 · 공공기관** 등의 활용 지원
- * 신정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전체의 2% 수준으로 샘플링한 후 비식별처리한 데이터

다 국민의 자산운용 지원

- □ (지난만리서비스) 로보어드바이저 (17.5월 업무개시), 독립투자자문업**(17.3월 등록요건·절차 신설)을 통해 對국민 금융자문서비스 품질 향상 기반 강화
 - * 테스트베드(1차 : 1~4월, 2차: 2분기) 통과 후, 대고객 서비스 실시(5월)
 - ** 독립투자자문업 제도개선을 마무리(3월)하고, 독립투자자문업자(IFA)의 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에서의 조기정착 유도('17.상)
- 금융상품의 **자문부터 구매까지 One-Stop**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에 따른 구매시 투자권유절차^{*} 정비('17.상')
 - * 투자자가 자문업자에게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을 단순구매하는 경우,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
- □ (ISA) 출시 1년('17.3월) 성과평가 후, ISA 세제혜택 확대,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('17.하, 관계부처 협의)
 - * ISA 세제혜택을 현행대비 2배 확대, 중도인출 허용, 만60세 이상 노년층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(김종석 의원 대표발의)이 국회 계류 중
- □ (펀드시장 활성화) 성과보수 펀드 출시('17.1분기), 우체국·상호 금융 펀드판매 허용 및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확대 추진('17.상')
- 사모투자 재간접펀드, 액티브 ETF, 창업·벤처 PEF 등 **다양한 펀드상품 출현** 도모('17.1분기)
- □ (개인연금법 제정)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금법 제정*('17.2분기 국회제출)
 - *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'가상관리계좌' 도입,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 도입
- □ (고령화 대비 보험) 신체적·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자의 건강 및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* 추진('17.4분기)
 - * 예) 노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, 장기 간병보험 표준화 유도 등

Ⅲ. 금융위원회 일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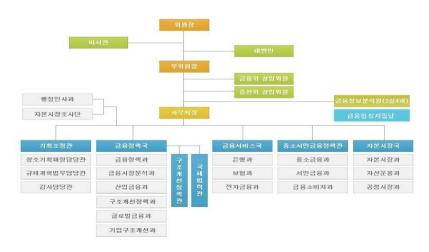
- 1. 기구 및 조직
- 2. 부서별 주요기능
- 3. 정원 및 현원
- 4. 2017년 예산 및 기금 현황
- 5. 소관 법률 현황
- 6. 산하 공공기관 현황

1 기구 및 조직

□ (금융위원회)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

-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 2인, 비상임위원 1인, 당연직 4인* 등
 총 9인으로 구성
 - * 당연직: 기획재정부 차관, 금융감독원장, 한국은행 부총재, 예금보험공사 사장
-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**1관 3국 1대변인 3정책과 20과로 사무처를 구성**
- □ (증권선물위원회)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, 기업회계기준· 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설치
- 위원장(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), 상임위원 1인,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
- □ (금융정보분석원)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

<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>



2 부서별 주요기능

구 분	주요 기능
기획조정관	·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·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·집행의 조정 ·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· 내·외부 감사 및 비상계획업무 총괄
행정인사과	·내·외부 인사 및 조직 관리 ·자금의 운용·회계 및 결산
금융정책국	·금융정책의 수립 및 감독업무 총괄 ·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외국환건전성 감독 ·중소기업금융정책 및 예금보호정책 수립
구조개선정책관	·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·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
국제협력관	·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·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
금융서비스국	·은행업 및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·은행업 및 보험업 감독·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·전자금융거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책 수립
중소서민금융정책관	· 중소금융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· 서민금융정책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 ·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·총괄
자본시장국	· 자본시장정책 수립 및 총괄· 자산운용 관련 정책 총괄·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 정책 총괄
자본시장조사단	·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총괄 ·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·분류 · 국내외 불공정거래 조사기관간 협력
대변인	·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·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
금융현장지원단	· 금융현장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접수 · 금융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사후관리 ·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
금융정보분석원	·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·감독 제도 운영 ·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·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

3 정원 및 현원

□ **정원 : 258명, 현원 : 266명** (*17.2.10. 현재)

		•	•		
	정무직	일반직	별정직	특정직	계
정원 합계	2	245	3	8	258
(현원 합계)	(2)	(253)	(3)	(8)	(266)
본부	2	211	3	-	216
금융정보분석원	-	42	-	8	50

4 2017년 예산 및 기금 현황

□ '17년 소관 예산 : 1조 9,534억원 ('16년 대비 △3%)

○ '17년 금융위원회 운영예산은 1,534억원 ('16년 대비 △28.3%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예산(A)	2017예산(B)	증감액 (B-A)	증감율 (%)
일반 회계(I+Ⅱ)	2,014,174	1,953,414	△60,760	△3
I. 금융위원회 운영	214,174	153,414	△60,760	△28.3
ㅇ 인 건 비	22,556	23,330	774	3.4
○ 기 본 경 비	7,372	7,436	64	0.9
ㅇ 사 업 비	184,246	122,648	△61,598	△33.4
II. 내부 거래	1,800,000	1,800,000	_	_
○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	1,800,000	1,800,000	_	_

* 주요 사업 : 산업은행·수출입은행 출자(해운보증기구 설립)(650억원), 국제중재 수행(39억원),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(10억원) 등

□ 기금 : 공적자금상환기금 16조 1,235억원 등 금융위 소관 7개 기금 운용계획은 총 37조 1,433억원('16년 대비 23.8%)

(단위 : 백만원)

	2016년	2017년	증감	
기금명	(A)	(B)	B-A	%
공적자금상환기금	11,163,473	16,123,501	4,960,028	44.4
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	100,431	86,563	△ 13,868	△ 13.8
신용보증기금	4,872,189	5,334,747	462,558	9.5
기술보증기금	2,468,867	2,408,997	△59,870	△2.4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	1,015,978	1,007,434	△8,544	△0.8
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	3,883,456	3,190,784	△692,672	△ 17.8
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	6,481,124	8,991,280	2,510,156	38.7
 합 계	29,985,518	37,143,306	7,157,788	23.8

5 소관 법률 현황

□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43개

구 분	법 률 명
금융정책 관련 (4)	·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, 금융지주회사법, 한국주택금융공사법,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기업금융 관련 (5)	· 한국산업은행법, 중소기업은행법, 기술보증기금법, 신용보증기금법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
구조개선 관련 (6)	· 공적자금관리특별법, 공적자금상환기금법,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,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, 예금자보호법, 기업구조조정촉진법
글로벌금융 관련 (1)	·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
은행 관련 (5)	· 은행법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, 유시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,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,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
보험 관련 (3)	·보험업법,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, 보험사기방지 특별법
전자금융 관련 (2)	· 전자금융거래법,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중소서민금융 관련 (6)	·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,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신용협동조합법,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 관련 (7)	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공사채등록법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, 담보부사채신탁법, 전자단기 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,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,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16.3.22 공포 및 시행일 미정)
희계 관련 (2)	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, 공인회계사법
금융정보분석원 (2)	·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

6 산하 공공기관 현황

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공기관: 8개 기관

- **(신용보증기금・기술보증기금)** 담보력 부족기업・기술 기 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
- (예금보험공사·한국자산관리공사) 예금보험제도 운용, 금융회사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
- (한국주택금융공사)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, 전세자금 및 주택건설 자금 대출보증, 주택연금보증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 · 안정적 공급 촉진
- (한국예탁결제원)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,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달성
- o (한국산업은행) 성장동력산업 확충,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
- (중소기업은행)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

② 기타 산하공공기관:1개 기관

○ (금융감독원) 금융위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· 감독업무 수행

[참고] 공공기관 지정요건

ţ	분류	지정요건	금융위 소관 공공기관	
	공기업	자체수입 50% 이상 직원 50인 이상	0	_
공공 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	준정부기관	자체수입 50% 미만 직원 50인 이상	5	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예 금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
	기 타 공공기관	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	3	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한국예탁결제원
기타 산하공공기관 -		1	금융감독원	